

감 사 보 고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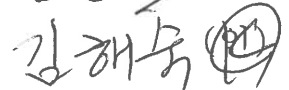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호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숭의학원의 2019. 3. 1부터 2020. 2. 29일로 종결되는 2019회계연도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결산서의 각 항목은 정확하였으며,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.

2020. 4. 6.

학교법인 숭의학원

감 사  (인)

감 사 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 직명 법인업무담당

성 명  (인)

학교법인 숭의학원 이사장 귀하